

## 要 約

- 감사기간 : 2020. 5. 25 ~ 7. 10 [20일간]
- 감사대상
  - **중합감사 4개 기관 (동인천동, 송월동, 신포동, 신흥동)**
- 감 사 반 : 감사팀장 外 3명
- 감사범위
  - **2017년 9월 ~ 2020년 3월 (예산집행 등 행정업무 전반)**
- 감사결과
  - **총 평**
    - 이번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에 의거, 2017년 9월 이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음.
    - 감사결과 총 4개 분야 중 6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로는 **시정 29건·주의 37건**, 재정상 조치로는 **530천원 추징·1,799천원 회수·223천원 환급·454천원 지급** 할 것을 요구하며, **신분상 주의 10명**에 대한 처분이 필요함.
  - **세부 처분내역**

구 분 기 관 명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건)					신분상 (명/건)	현지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환급	지급		
계	66	29	37	3,006/27	530/7	1,799/12	223/2	454/6	10/9	16
동인천동	15	7	8	721/7	225/3	365/2	101/1	30/1	1/1	4
송월동	15	5	10	438/4		360/3		78/1	3/2	4
신포동	18	9	9	971/8	124/2	611/4		236/2	2/2	4
신흥동	18	8	10	876/8	181/2	463/3	122/1	110/2	4/4	4

# 목 차

I . 감사개요 .....	1
II . 감사결과 .....	2
① 총 평 .....	2
② 처분현황 .....	3
③ 주요 지적사항 .....	5
④ 신분상처분 대상자 명단 .....	19
III . 우수사례 .....	20
IV . 향후계획 .....	25

〈붙임〉 처분요구서 (본처분 및 현지조치)

# I

## 감사개요

### 1 감사목적

- 행정의 최일선 기관인 행정복지센터의 예산집행, 사회복지, 주민등록 및 민방위 등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업무처리 실태를 개선·시정함으로써 신뢰받는 구민 행정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 2 감사기간 및 대상

- 감사기간 : 2020. 5. 25 ~ 7. 10 (20일간)
- 감사범위 : 2017. 9월 ~ 2020. 3월

#### ☞ 감사 대상별 세부내역

수감기관	감사종류	감사기간	수감기간
동인천동	종합감사	2020.5.25 ~ 5.29	2017. 9월 ~ 2020. 3월
송월동	종합감사	2020.6. 8 ~ 6. 12	2017.10월 ~ 2020. 3월
신포동	종합감사	2020.6.22 ~ 6. 26	2018. 3월 ~ 2020. 3월
신흥동	종합감사	2020.7. 6 ~ 7. 10	2018. 3월 ~ 2020. 3월

- 감사반 : 감사팀장 외 3명

감사자	감사분야	비고
지방행정 7급 이선영	예산·회계, 통·반장, 주민자치분야	
지방시설 7급 오혜환	공사, 하자보수, 민방위분야	
지방행정 8급 박조애	민원행정, 사회복지분야	

### 3 중점 감사사항

- 예산·회계 분야
  - 세출예산 목적 외 집행, 관련 법규 위반 회계집행 여부 등
- 일반행정 분야
  - 직원복무 상황, 물품관리, 통·반장 관리 실태
  - 주민자치센터 운영, 민방위대 편성·교육 등 민방위 자원관리 실태

- 민원행정 분야
  - 주민등록 등 민원사무 법규준수 여부, 과태료 및 제증명 수수료 관리 실태 등
- 복지행정 분야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관리, 기타 복지업무 전반 적정처리 여부 등
- 지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반복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 II 감사결과

### 1 총 평

- 이번 4개 기관에 대한 감사는 『인천광역시 중구 감사 규칙』에 의거,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신뢰받는 구민행정 실현 및 투명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한 결과,
- 민원 최일선에서 점차 다양하고 다각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 요구에 대응하여 적극적인 업무 처리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일부 업무에 대한 잘못된 선례답습, 규정 준수 소홀 등으로 예산·회계, 일반 행정, 민원행정, 복지행정 각 분야에서 총 66건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 시정29건·주의37건과 재정상 조치 530천원 추징·1,799천원 회수·223천원 환급·454천원 지급이 요구되며, 신분상 조치(개인주의 10명)에 대한 처분이 필요함.
- 해당 동에서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는 물론,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게는 “주의” 조치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담당 직원이 관련 법규나 지침 등을 숙지하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기관장 소관 하에 직무 교육 및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2 처분현황

### ○ 처분요구내역 총괄

구 분 기 관 명	행정상 (건)			재정상 (천원/건)					신분상 (명/건)	현지 조치
	계	시정	주의	계	추징	회수	환급	지급		
계	66	29	37	3,006/27	530/7	1,799/12	223/2	454/6	10/9	16
동인천동	15	7	8	721/7	225/3	365/2	101/1	30 /1	1/1	4
송월동	15	5	10	438/4	-	360/3	-	78 /1	3/2	4
신포동	18	9	9	971/8	124/2	611/4	-	236/2	2/2	4
신흥동	18	8	10	876/8	181/2	463/3	122/1	110/2	4/4	4

### ○ 지적사항 목록

연번	분야별	제 목	소 관	처 분 내 역		
				신분상	행정상	재정상(원)
1	예산회계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동신 신포동		시정	추징 220,000
2	"	연가보상비 착오(과다, 과소) 지급	동송 신흥동		시정	회수 314,740 지급 288,750
3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동송 신흥동		시정	회수 740,640 지급 30,000
4	"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송월동		시정	회수 30,000
5	"	공공요금 납부 업무 소홀 및 연체료 지출 부적정	신포동		시정	회수 5,520
6	"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신흥동	주의(1명)	시정	회수 160,000
7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동신 신흥동		주의	
8	"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동신 신흥동		주의	
9	"	물품 검수 소홀	송월동		주의	
10	"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송월동		주의	
11	"	자율방범대 급량비 지급 부적정	신포동		주의	
12	"	하자 만료검사 부적정 등	동송 신흥동	주의(1명)	주의	



### 3 주요 지적사항

#### 가 예산·회계 분야

##### 1. 지역개발채권 매입필증 미징구 [동인천동, 신포동]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의하면 2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도급계약, 용역계약, 물품구매·수리·제조계약을 신청하는 자는 100분의 2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동인천동, 신포동에서는 200만원 이상의 용역 계약 건에 대하여 지역개발채권을 미징구한 사실이 있음.

##### 2. 연가보상비 착오(과다, 과소) 지급 [동인천동, 송월동, 신포동, 신흥동]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연가 일수의 공제)에 따르면 ①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 일수에서 뺀다. ②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연가일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중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text{해당연도 연가일수} \times \frac{\text{해당연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한 기간(월)}}{12\text{개월}}$$

③ 제2항에서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법 제63조에 따라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2. 연도중 신규임용되거나 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가. 신규임용일 전일까지의 기간 나. 퇴직일부터의 기간

- 동인천동, 송월동에서는 복직한 직원의 연가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신포동, 신흥동에서는 직원의 재직기간에 대한 연가일수를 착오 산정하여 연가보상비를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 3.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부적정 [동인천동, 송월동, 신포동, 신흥동]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의 규정에 의해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337p 7.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다. 지급제의 대상자 3)당직명령에 의한 당직근무자(재택당직자 포함), 4)재택근무자가 재택근무일에는 시간외근무수당 실적 지급분을 지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공무원에게 별도의 시간외근무명령이나 승인없이 월10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 15일에 미달하는 매1일마다 1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동인천동 등 3개 동에서는 재택근무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착오 지급하였고 동인천동 등 4개 동에서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도 월 10시간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으로 과지급한 사실이 있음.

### 4. 특근매식비 중복 지급 [송월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362호)」에 의하면 직원특근매식비 지급은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 종료 후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특근매식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날 별도의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이나 근무 종료 후 행사로 인하여 급식이 제공되었다면 직원 특근매식비를 이중으로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 송월동에서는 업무추진비(무단투기 야간단속 직원 격려, 방위협의회와의 간담회)로 야간에 직원 4명에게 급식이 제공되었음에도 초과근무 특근매식비 30,000원을 이중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음.

## 5. 공공요금 납부 업무 소홀 및 연체료 지출 부적정 [신포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 1 장 자치단체 세출 예산집행 10대 원칙, 세출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지방재정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 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現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2020.5.1.)」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에 따르면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 기한이 도래한 후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부과 된 공공 요금에 대하여 납기일까지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연·납부되지 않도록 예산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

- 신포동에서는 2건 공공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고 5,520원 연체료가 발생 하였으며 이를 세출예산으로 집행하여 예산의 목적외 용도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6.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신흥동]

육아휴직 결원 발생에 따른 통합사례관리사 대체인력 채용 계획 [신흥동-763(2018.01.29.)] 에 의하여 2018.3월~2019.2월까지 기간제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으며 출장여비가 월100,000원 으로 산정되어 있고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 지침 급여지급 기준을 준용하며, 2018년 희망복지지원단 업무안내(보건복지부) 143p 통합사례관리사의 관내·외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지급기준 규정을 준용하여 집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 제1항에 의하면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공무원에게는 2만원을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중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는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신흥동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의 출장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1개월씩 일괄 1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출장여비 지급업무를 소홀히 하여 160,000원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 7.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배 [동인천동, 신포동, 신흥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1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10대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지방재정법 제7조, 지방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동인천동에서는 체력단련실 도시가스비 지급 및 주민자치센터 소변기 및 탈의실가림막 교체 공사 등 전년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신포동, 신흥동에서는 우편요금 지출 등 전년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8. 세출예산과목 집행 부적정 [동인천동, 신포동, 신흥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1>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III장(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 지침)에 따르면 사무관리비(201-01)는 기본행정사무용품 및 사무와 관련된 소모성물품 구입비로 규정되어 있으며, 음료 및 다과의 구입은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공공운영비(201-02) 3.시설장비유지비는 장비,시설,시스템 등에 부속되어 일부를 이루는 부품(물품)을 수리차원에서 교체하는 경우에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있다.

행사운영비(201-03)는 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소요되는 초청장·현수막 등 일반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장비·물품의 임차료, 강사료, 행사지원을 위해 참여한 공무원 식비는 지급가능하나 행사에 참여한 초청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식비는 본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 동인천동에서는 주민자치센터 운영물품 구입(사무관리비)에서 음료를 구입하였고 신포동에서는 자동문 회로 교체 수리를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였으며, 신흥동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식비 및 간식비 등을 행사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이 있음.

## 9. 물품 검수 소홀 [송월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검사)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를 하는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단, 3천만원 미만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등 검사조서의 작성이 성질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가의 지급)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물품·용역, 그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서는 검사한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송월동에서는 자산취득비로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지출결의서상 주문, 납품, 검수, 물품출납부 기재 도장 날인을 누락 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등 물품 검수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0. 신용카드 결제계좌 관리 소홀 [송월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제Ⅳ장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카드사용요령)에 의하면 신용카드 이용대금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첨부하여 결제일까지 해당 예산과목에서 부서별 카드이용대금 결제계좌로 입금하며, 담당공무원은 매월 1회 카드사용내역을 보고하고, 분임재무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 송월동에서는 신용카드 결제계좌에 원인미상 51,702원을 장기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음.

## 11. 자율방범대 급량비 지급 부적정 [신포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Ⅳ장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 사용요령 5. 현금영수증 카드의 등록 및 관리 ○비목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급량비 중 특근매식비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 예산 지출하는 경우 일정기간(1개월 미만)을 합산하여 1건으로 현금영수증 사용 가능토록 정하고 있다.

- 신포동에서는 자율방범대 급량비(야식비) 집행 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여 처리하고 현금영수증 처리하지 않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급량비 집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2. 하자 만료검사 부적정 등 [동인천동, 송월동, 신포동, 신흥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 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 동인천동에서는 9건의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만료검사를 실시하였고 인현전동 경로당 전기공사에 대하여 전기공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1년보다 3년으로 착오 설정한 사실이 있음.
- 송월동에서는 9건의 공사에 대하여 2018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실시 하지 않고 있으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만료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신포동에서는 5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경과한 후 만료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신흥동에서는 1건의 공사에 대하여 하자보수 보증기간 만료 14일 도래 전 만료검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음.

## 13. 공사내역서 검토 및 공사감독 부적정 [동인천동, 송월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내역의 정정 또는 설계변경 등을 검토해야 한다.

- 동인천동, 송월동에서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계약에 없는 추가 공사를 시행하거나 공사자재를 변경하여 시공하는 등 계약서와 상이하게 시공된 부분이 있음에도 준공(정정)내역서 없이 준공검사를 시행하였음.

#### 14. 공사 준공서류 검토 소홀 [신포동, 신흥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 공무원은 공사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가 계약서, 설계서 기타 관계서류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 및 대가를 지급하여야 하며, 현장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처리하고 처리한 사항을 준공계 제출 시 발주관서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관서는 제출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 후 준공하여야 한다.

- 신포동, 신흥동에서는 준공검사 시 폐기물처리 증빙자료를 누락하였음에도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공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음.

#### 15. 시설공사 추진 시 관련법령에 의한 협의 소홀 [송월동]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시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서는 시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하여 도로구역 내에 설치하는 표지를 말하며, 설치하기 전 유관부서(건설과)와 협의를 통하여 표지판의 크기 및 색상, 도면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사전 협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 송월동에서는 2017년 청사안내판 제작설치 과정에서 유관부서와 사전협의 절차 없이 공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음.

### 나 일반행정 분야

#### 16. 민방위대 편성사실, 소속, 임무통지 소홀 등 [동인천동, 송월동, 신포동, 신흥동]

「민방위기본법」 제20조(편성 절차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동장은 매년 민방위대를 편성한 후 소속 민방위 대원에게 민방위대 편성 사실과 소속 및 임무 등을 통지하여야 하고,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1조(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자원을 지정할 때에는 인력지정통지서를 교부하고 3년간 수령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 동인천동 등 4개 동에서는 민방위편성표를 작성하지 않고, 해당 주민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 소속, 임무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았으며 동인천동에서는 중점관리대상 인력지정 통지서 교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17. 민방위 교육 불참자 처리 부적정 [동인천동, 송월동]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제2항,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제2항, 같은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민방위 대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10일, 총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고 교육 및 훈련 명령을 받은 민방위 대원은 이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방위 교육불참자 과태료 부과는 수령증 등 증빙서류(등기우편 발송대장, 공시송달 내역 등)를 3건 확보하여야만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민방위 교육지침」에서 명시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안전관리과, 교육훈련의 참석알림 여부는 각 동에서 관장하고 있다.

- 동인천동, 송월동에서는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참여 독려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한 사실이 있음.

## 18. 위·해측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신포동, 신흥동]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8-1.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301-05)에 따르면 통·이장 변경 시에는 수당 및 상여금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방식에 의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7조(실비변상의 방법)제1항 “통장의 월정수당은 위축 또는 위축 해제일을 기준으로 월정액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다.

- 신포동, 신흥동에서는 해측된 통장에 대하여 해측월 통장수당을 미지급하거나 통장수당 계산 시 해측일을 제외하여 착오 지급하였고, 신규 위축된 통장에 대하여 위축월 일할 계산분 통장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이 있음.

## 19. 통장 종량제봉투 중복 지급 [신포동]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수수료의 면제)에 의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종량제 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고, 일반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명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할 수 없으며,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수수료의 면제 대상자)에서는 「인천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장 및 반장에 대해 수수료 면제가 가능하다.

- 신포동에서는 18통장 세대에 대해 통반장 종량제봉투와 수급자용 종량제봉투가 중복 지급되었음.

## 20. 차량운행일지 작성 부적정 [신흥동]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공무원의 주의 의무)에 따르면, 공유재산 및 물품을 관리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이 법과 그 밖의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에 종사하여야 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15조(차량의 관리) 제1항에 따르면 차량 집중관리부서 및 지정받은 관리부서는 해당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 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또한 같은 규칙 제21조(기록관리) 단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1. 차량유류수불대장 2. 차량 운행일지 3. 차량이력카드 4. 그밖의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를 비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을 차량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 신흥동에서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서 실제 운전한 시간과 운전자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시간 및 동일한 사람(차량담당자)으로 기재함으로써 출장대장 내역상에 차량 미사용이나 차량운행일지는 운전자로 상이하여 지출업무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있음.

## 다 민원행정 분야

## 21. 전입신고 업무 처리 소홀 [동인천동, 신흥동]

「주민등록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전입신고는 세대주가 하여야 하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으면 그를 대신하여 신고대상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다. 본인이 신고를 할 때에는 세대주나 세대 또는 합숙사를 관리하는 사람의 확인을,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려는 사람은 신고서에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전(前)거주지의 세대주 혹은 세대원이 신(新)거주지의 세대원이 되는 경우 전입자, 전세대주 확인이 필요하다.

- 동인천동 등 2개 동에서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 전입자·전세대주 확인 등 신고서상의 구비요건 및 기재사항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전입신고를 수리한 사실이 있음.

## 22. 대리인 인감증명서 발급업무 소홀 [동인천동, 송월동, 신포동, 신흥동]

「인감증명법」 제12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인감증명서의 발급) 제4항에 따라 대리인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무인을 하여야 하며 영 별지 제15호 서식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인감증명서를 교부한다. 전산상으로 인감증명발급대장이 있음에도 수기발급대장을 관리하는 이유는 대리인의 발급 시 무인날인 때문이며 무인을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것은 진본성 논란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 동인천동 등 4개 동에서는 총 4건(동인천동 3건, 신포동 1건)의 인감증명발급 신청자(대리인)의 무인을 누락하였으며 총 23건(동인천동 1건, 송월동 15건, 신포동 1건, 신흥동 6건)의 인감 대리 발급내역을 수기발급대장에 기재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3. 수수료 인증처리 부적정 [동인천동, 신포동, 신흥동]

### 1) 인감변경 수수료 인증처리 부적정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제1항 인감증명서 발급은 통당 600원, 인감변경신고는 회당 600원을 수수료로 내야하며 「서명확인 및 인감증명 사무편람」에 따라 인감변경(방문·서면)신고를 받은 증명청은 수수료를 징수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인증기를 활용하여 수납하며, 인감변경신고가 끝나면 인감변경신고 관리대장에 신고자 인적사항과 수수료 납부사실(증지첨부)을 기재하여야 한다.

### 2)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인증처리 부적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르면 전입세대열람을 포함한 주민등록표의 열람은 1건 1회에 300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고, 소인 또는 인증기를 사용해 당해 전입세대열람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3)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인증처리 부적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수수료)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1명당 5천원을 수수료로 징수하며 재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27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제3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재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자체의 결함 때문에 자연적으로 훼손된 경우,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증의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국외로 이주한 사람이 영주하기 위하여 귀국한 경우, 자연적 재해·재난으로 인한 경우, 시행령에 따라 최초로 재발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동인천동 등 3개 동에서는 인감 변경 수수료의 증지첩부를 총 4건(동인천동 1건, 신포동 3건)누락, 증지수입 처리를 총 112건(동인천동 16건, 신흥동 96건)지연함.
- 신흥동에서는 전입세대열람 수수료 223건의 증지첩부를 누락하여 66,900원의 세외수입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동인천동 등 3개 동에서는 주민등록증 재발급 처리 시 수수료면제 규정 오적용 및 증지첩부 누락으로 총 20건(동인천동 4건, 신포동 9건, 신흥동 7건) 99,700원의 세외수입 수수료 부과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

#### 24.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 부적정 [동인천동, 신흥동]

「주민등록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주민등록 사무편람」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신고 또는 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의 금액은 신고(신청) 지연기간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미성년자 등에 해당될 때에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으며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항에 따라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하도록 되어 있다.

- 동인천동에서는 이\*\*의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미성년자 자진 납부 시 감경규정(75% 경감)을, 윤\*\* 외 6명의 주민등록재등록신고지연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따른 자진 납부 시 감경규정(50% 경감)을 잘못 적용하여 101,000원을 과다부과, 65,000원을 과소부과 한 사실이 있으며

- 신흥동에서는 류\*\* 외 4건의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과태료 부과에 대해 미성년자 자진 납부 시 감경규정(75% 경감)을, 백\*\* 외 2건의 주민등록재등록신고지연에 대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따른 경감규정(50% 경감)을, 엄\*\*의 출생신고지연에 대한 자진 납부 경감(20% 경감)을 잘못 적용하여 122,000원을 과다부과, 80,000원을 과소부과한 사실이 있음.

## 25. 습득한 주민등록증 관리 소홀 [동인천동]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2조(습득한 주민등록증의 처리) 제1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43조제1항에 따라 습득주민등록증을 별지 제5호서식의 습득주민등록증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영 제4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습득주민등록증 수령통지서)에 따라 해당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령안내 통지를 한 날부터 1년이 지날 때까지 습득주민등록증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제44조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 동인천동에서는 감사기간동안 총 50건의 습득 주민등록증 처리에 대하여 습득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구두로만 안내하였으며 노\*\*외 1개의 주민등록증의 경우 1년간 찾아가지 않았음에도 그대로 보관하는 등 습득 주민등록증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 26. 전입세대열람 발급업무 부적정 [송월동]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에 따라 주민등록표를 열람하려는 본인이나 세대원 및 그 위임을 받은 자, 법에서 규정된 바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등록기준지의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확인한 주민등록자에게만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교부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인 전입세대 열람을 할 수 없고 외국인이 전입세대열람을 해야 할 경우 주민등록자에게 위임해야만 전입세대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 송월동에서는 신청권한이 없는 외국인 L\*\*\*\*\*에게 전입세대열람 내역을 교부한 사실이 있음.

## 27.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작성 소홀 [신포동, 신흥동]

「주민등록법」 제7조의2(주민등록번호의 부여)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이하 “주민등록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부여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법 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 및 「주민등록사무편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번호부여대장은 정정사항 기록관리 및 민원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기로 작성관리 하여야 하고 반드시 생년월일·성별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 신포동에서는 감사기간 내 총 32건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내역의 부여대장 작성에 있어서 생년월일·성별 구분 없이 기재한 사실이 있으며
- 신흥동에서는 부여대장을 성별 구분 없이 작성하였고 감사기간 내 총 15건의 주민등록번호 부여 내역을 부여대장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28. 세외수입 인증기 수수료 납입 지연 [신포동, 신흥동]

「인천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제6조(수입금의 정산)에 따르면, 전자증지 수입금의 납입은 구 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해야 하며, 전자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정산을 해야 하고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신포동에서는 세외수입 인증기 수수료를 총 174건 최대 16일간 납부 지연한 사실이 있으며, 신흥동에서는 총 179건 최대 15일간 납부 지연한 사실이 있음.

# 라 복지행정 분야

## 29. 장애인등록증 반환 처리 소홀 [동인천동, 송월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동법 시행규칙 제8조(등록증 반환통보) 및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장애등급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않았을 경우, 장애인 등록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등록증의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등록증 반환통보서를 반환기한 2주전까지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동인천동에서는 장애등록 취소,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장애인등록증 반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반환통보서를 미발송하고 구두로만 안내하였고 장\*\* 등 2명의 장애인등록증을 회수하지 않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으며 송월동에서는 유\*\*의 장애인 등록증을 회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30. 급식지원아동 관리업무 소홀 [송월동, 신흥동]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고,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 매뉴얼」에 따라 신청(추천)자가 행정복지센터나 온라인 등으로 신청하면 읍·면·동 담당자는 급식 신청 아동의 대상자 선정 기준 적합 여부, 급식지원형태 및 급식지원 시기 등을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

- 송월동 등 2개 동에서는 총 23건(송월동 5건, 신흥동 18건)의 급식지원 아동 조사표를 미작성한 사실이 있음.

### 3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종량제 봉투관리 소홀 [송월동]

「인천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0조(수수료의 면제) 제1항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에게 종량제봉투의 무료 제공 등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종량제봉투 무료지급 등) 제3항 “동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무료 지급분 종량제봉투를 그달 말일까지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별지 제7호서식의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수불대장에 따라 수불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송월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료지급 상황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종량제 봉투 잔량 파악이 불가능한 사실이 있음.

### 32. 청소년증 발급대상 관리 소홀 [신포동, 신흥동]

「청소년지원법」 제4조(청소년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청소년증의 발급)에 따라 구청장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청소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청소년증의 발급을 신청받은 구청장은 신청인 또는 대리인을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청소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청소년 사업안내」에 따라 청소년증을 송부받은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에 교부인을 날인 하고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하며 청소년증을 교부한 때에는 청소년증 발급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신포동 등 2개 동에서는 총 9건(신포동 6건, 신흥동 3건) 청소년증 발급내역을 발급대장에 기록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총 3건(신포동 3건)에 대해서 수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누락한 사실이 있음.

### 33. 장애인 등록 등 신청서 관리 소홀 [신포동]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의 등록신청 및 장애 진단)에 따르면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교부 요청 의서’에 서명하여 담당자가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열람(활용)하도록 되어 으며,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 전반과 이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의하는 내용을 담은 ‘안내 및 동의사항’에 서명 또는 인 하도록 되어있다.

- 신포동에서는 장애인등록신청 15건, 장애인등록증 발급 신청 6건의 신청 처리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 또는 인을 받지 않고 업무 처리한 사실이 있음.

## ④ 신분상처분 대상자 명단

※ 별도 통보

**【동인천동】**

- 2019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시범사업에 따른 -

**동인천동 주민총회 개최**

□ 목 적

- 2019년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동계획형 시범사업에 공모하여 우리 동이 선정됨에 따라 동 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민관 숙의를 거친 주민제안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주민총회 실시
-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로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 민주주의 실현

□ 사업 개요

- 기 간
  - 사전투표 : 2019. 8. 30.(금) ~ 9. 11.(수)
  - 주민총회 : 2019. 9. 19.(목)
- 주관·주최 : 동인천동 참여예산 동계획형 추진단
- 장 소
  - 사전투표 : 관내 학교, 상가,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등
  - 주민총회 :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이든홀)
- 투표 참여 : 860명
  - 추진단 : 34명
  - 사전투표 : 715명 (성인 367명, 청소년 348명)
  - 주민총회 : 111명 (성인 111명)
- 내 용
  - 사전투표
    - 찾아가는 투표소 운영 : 관내 학교, 상가 등 추진단 방문 종이투표

- 열린 투표소 운영 : 동인천동행정복지센터 정문 앞 투표소  
(투표함, 기표대) 설치 종이투표
- 주민총회 : 추진단 주민제안사업 설명, 현장 종이투표, 투표결과 발표 등

## □ 기대효과

-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해 우리동 주민 스스로가 참여해 사업을 발굴·기획하여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및 주민자치 기반 조성 마련

## □ 관련사진

- 사전투표



- 주민총회



## □ 목 적

- 송월동 동화마을의 지속적인 가로환경 정비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동화마을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자 함

## □ 수범내용

- 관광객 편의를 위해 동화마을 내 상시주차 차량 파악 후 공영주차장으로 이동주차 계도
- 동화마을 환경정비를 위한 자생단체와의 주기적인 간담회 실시로 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방안 모색
- 위험시설물 등 정비사항 확인 및 해당부서에 정비 요청

## □ 기대효과

- 주민 스스로 가꾸는 송월동 동화마을을 조성하여 쾌적하고 활기 넘치는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 □ 관련사진



## [신포동]

# 신포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

### □ 목 적

- 신포역 주변 인도 가로등에 봄·가을 초화로 가로등걸이 화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지역특성을 살린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여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함

### □ 개 요

- 기 간 : 2020. 5월 ~ 9월
- 위 치 : 신포역 ~ 답동사거리(가로등)
- 사업내용
  - 가로등꽃걸이 2단 설치(17개소)
  - 웨이브페쉴리아 등 봄·가을 초화 식재
- 사 업 비 : 10,000천원 범위 내

### □ 기대효과

- 신포동을 찾는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시각적인 즐거움을 제공하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으로 도심이미지 개선에 기여
-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민자치능력 향상에 이바지

### □ 관련사진



## [신흥동]

# 사례관리 대상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 민·관 합동 쓰레기집 청소 -

### □ 목 적

- 신흥동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쓰레기 집)사례관리 대상자에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부녀회 및 민관합동으로 대상자의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하여 정서적 사회적 지지 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 관계를 강화하고자 함.

### □ 개 요

- 일 시 : 2019. 6. 24.(월) 10:00 ~ 17:00
- 장 소 : 향운아파트 정○○
- 소요예산 : 500천원 범위 내
- 주요내용
  - 주거 내부 환경 개선이 시급한 사례관리 대상자의 가정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 및 새마을 부녀회, 민간기관에서 직접 물건을 치우고 청소
  - 필요한 가전제품은 정부물품 재활용센터 사이트를 통하여 신청
  -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로 청소도구와 용품 등 지원

### □ 기대효과

- 사례관리대상자의 집을 직접 청소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새마을 부녀회 및 민관기관들의 지역복지에 대한 책무 고취

### □ 관련사진



## IV

## 향후계획

---

-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 해당기관 통보
  - 시 정 : 60일 안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회보
  - 주 의 : 직원 교육 및 업무 연찬 후 직원교육일지 제출
- 감사결과 지적사례 전파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사전예방
- 공공감사시스템 처분사항 입력관리 및 이행여부 확인

붙임 처분요구서 각 1부